

보도시점 2026. 7. 7.(화) 12:00 / 배포 2026. 7. 7.(화) 08:30
<7. 8.(수) 조간>
[7.7.(화) 석간 지면 가능]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 7년 5개월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전분사’)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상(주), (유)사조씨피케이, (주)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주)(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생략)

※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함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 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다.

<행위 사실>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하였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 전분·전분당은 원재료인 옥수수가격이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5차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전분사가 작성한 제3차 합의내용 >

		목표금액		전분사별 거래처 통지가격				
	18.05	20.12	인상금액	A	D	B	C	비고
옥수수	220	255	70(40)	77(45)	79(48)	78(47)	80(50)	
환율	1,120	1,150	65(55)	73(61)	74(63)	76(65)	75(65)	소분 최저 470, 1차 20원, 2차 30원
			30	35	38	37	40	
적용시점: 12.01부 (12.16부)			65(30)	72(35)	74(36)	75(35)	77(36)	
공문: 11.16이전			95	104	107	105	108	Waxy 등
			75	83	84	83	85	
			65	73	75	73	74	아이스올리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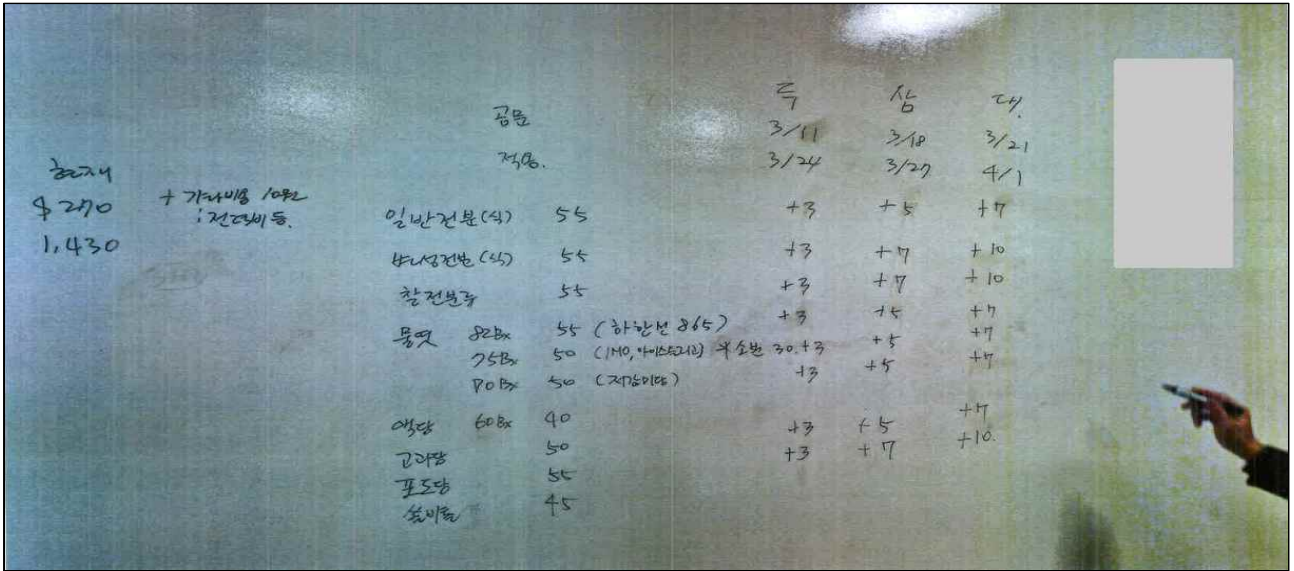
적용	12/14	12/16	12/11	12/7
발송	11/16	11/19	11/23	11/26

**전분사별
가격인상(적용) 및
공문발송 시기**

구분	18.05	20.12	증감
원료가	220	255	16%
환율	1,120	1,150	3%
	246	293	19%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인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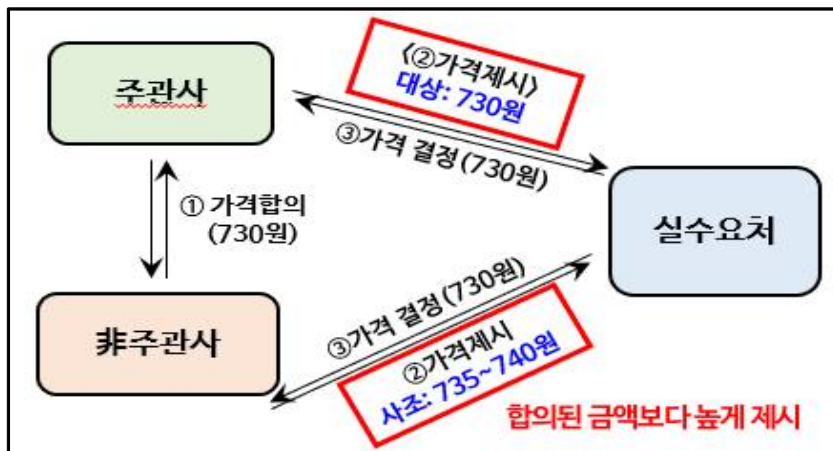
< 전분사가 합의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 >



이와 같은 합의 이후, 전분사들은 실제 합의 내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행 여부를 매우 철저히 점검하였다. 예컨대, 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하여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실제로 공문이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분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각 수요처 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非주관사)는 주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함께 설득하는 등 목표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거래처별 협상과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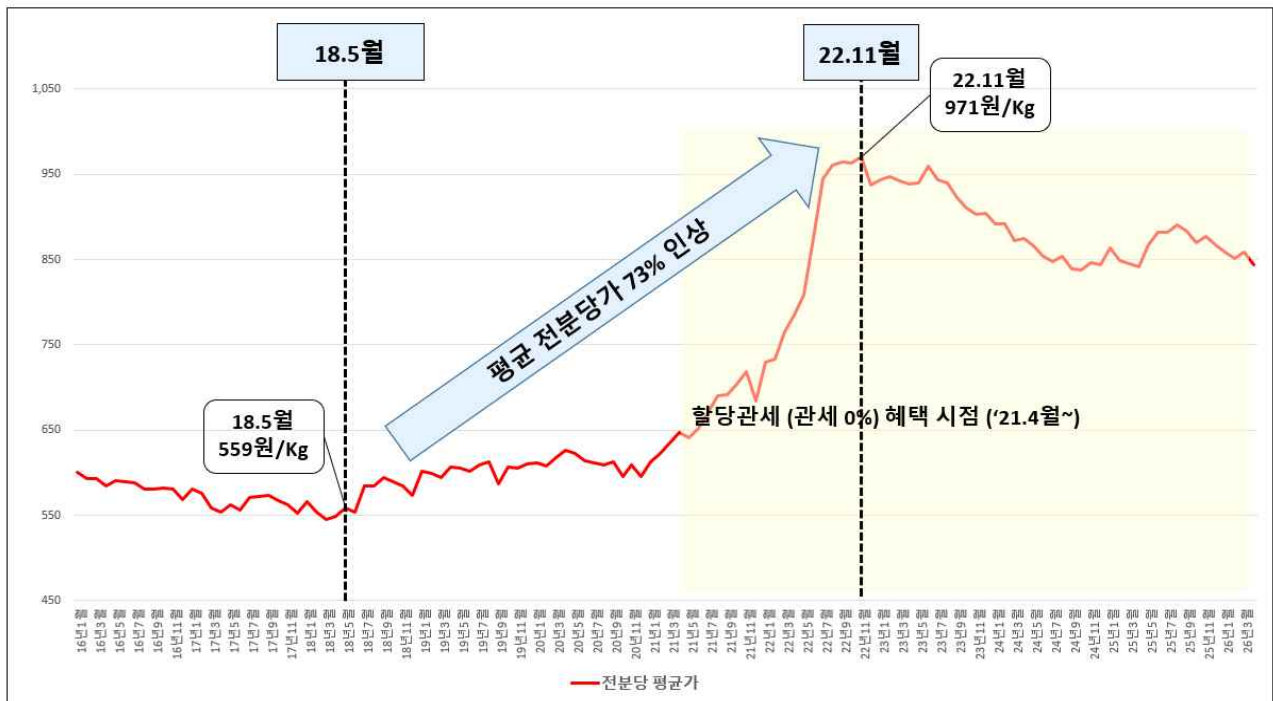
<담합의 효과>

국내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분사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였다. 특히,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하였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73% 인상하였다.**

그 결과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으며,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었다.

< 전분당 평균 가격 변동 >



* 할당관세는 전분당협회 등을 통해 추천받은 자(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전분당 제조업체)에게 적용되며, '22~'24년 동안 할당관세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수입이 이루어짐(전량 0% 관세 적용)

<조치 내역>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대해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범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밀가루 담합 건(2006년 4월, 2026년 5월), 인쇄용지 담합 건(2026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부과된 것이다.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에는 ① 이 사건의 공동행위가 7년 5개월의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점, ② 국내 전분당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4개 전분사들 간 시장점유율의 큰 변동 없이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담합 재발 가능성이 큰 점, ③ 마지막 합의 시 결정된 가격이 담합 이전 경쟁상황 수준으로 인하됨으로써 합의의 영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감안되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들의 가격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붙임> 4개 전분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 <첨부> 1. 전분 및 전분당 상품 설명
 2. 과거 담합 사건 중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건
 3. 전분사 4사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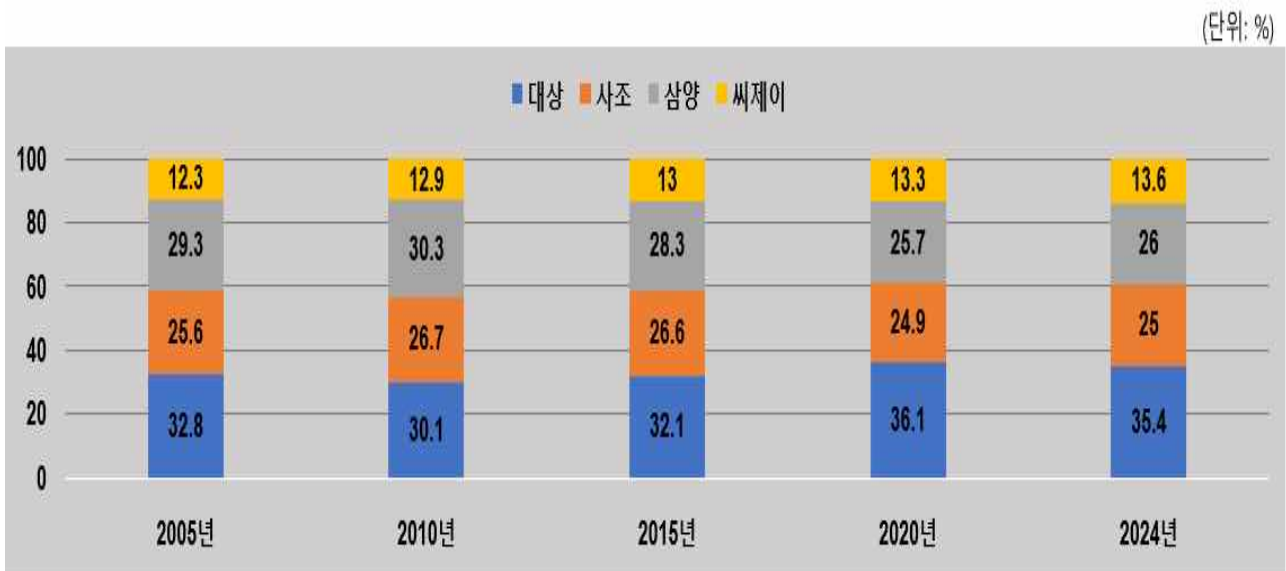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선미 (044-200-4533)
	카르텔조사국 제조카르텔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정 (044-200-4534)
			사무관	김재민 (044-200-4542)
			조사관	나상태 (044-200-4543)
			조사관	조규성 (044-200-4541)
			사무관	정문홍 (051-460-1020)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조사관리관실 중점조사팀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0-4606)
	조사관리관실 경제분석담당관실		담당자	원이중 (044-200-4617)

1

담합 배경

- (시장 구조) 국내 전분당 시장은 담합 발생이 용이한 과점적 구조를 갖는다.
 - 수입 비중이 높지 않아 4개 전분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분 95.7%, 전분당 86.4%로 매우 높으며,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지난 20년간 이들의 점유율이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특히, 4개 전분사는 해외에서 가공용 옥수수를 공동으로 구매·운송함으로써 원가구조가 유사하고, 전분당 제품의 품질이 유사하고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이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이므로 가격담합의 유인이 크고 용이하다.

< 전분당 시장점유율 >



* 소갑 제3-1호증, 전분당협회 제출자료, 옥수수사용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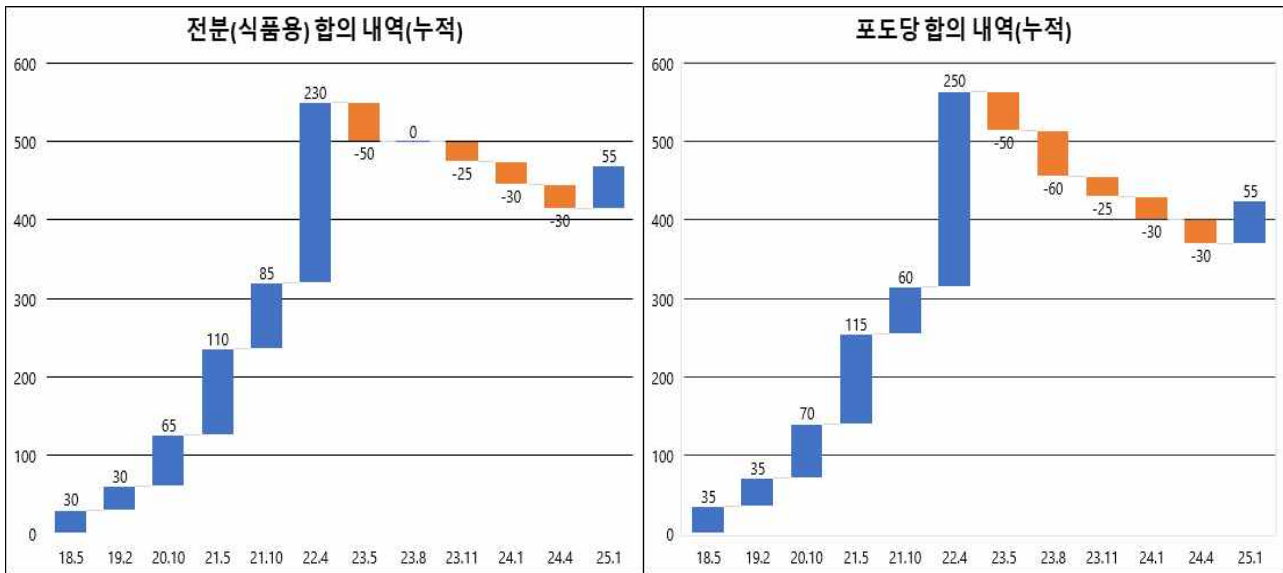
- (합의 배경) 전분사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신속히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이 인하 되는 경우에는 판매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전분사들은 이 과정에서 실수요처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하였다.

2

법 위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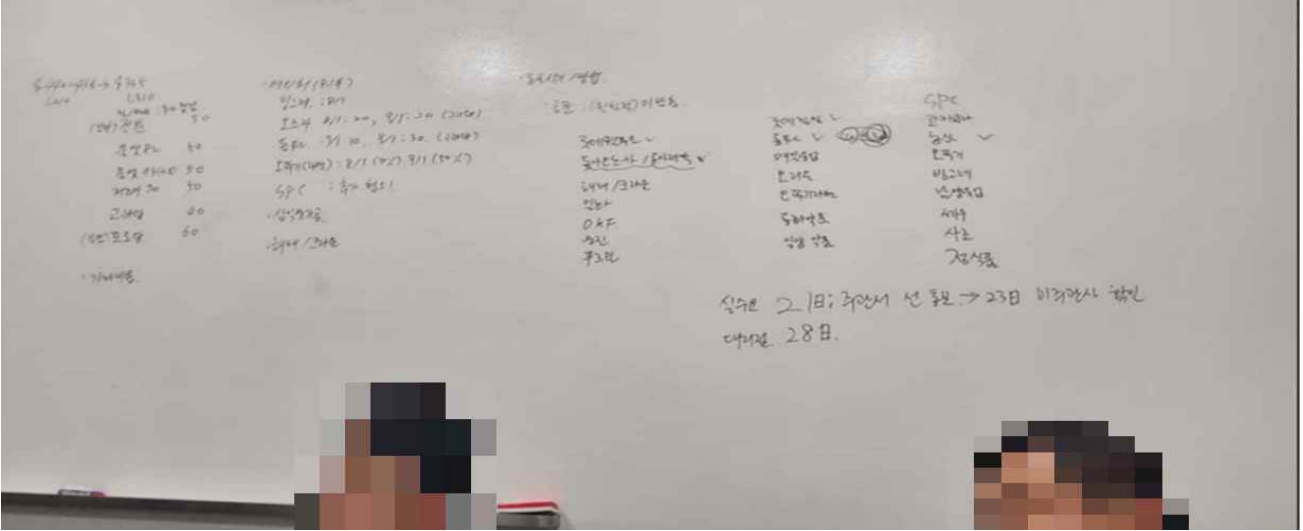
- (합의 내용) 전분사들은 담합 기간 동안 총 13차례 합의를 통해 국제 옥수수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전분당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7차례)하였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5차례)하였다.
 -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 12차례 가격 인상·인하 합의 내역 >



- 나머지 1차례 합의는 자체 계산식에 따라 구매단가를 결정하는 특정 실수요처 (동서식품)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로서, 당해 구매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의 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 2023. 8월 팀장급 합의 사진 >



□ (합의 방식) 전분사들은 임원급 모임에서 목표가격, 적용 시기 등을 개략적으로 합의하고, 팀장급 모임에서 ①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 변동 근거(원가요인), ② 품목별 목표 인상 금액, ③ 인상 시점, ④ 사업자별 공문 발송 순서·일자, 공문에 기재할 인상적용 일자 및 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하였다.

< 2020. 10월 팀장급 합의 내용 >

18.05	20.12					
옥수수	220	255				
환율	1,120	1,150				

③	적용시점: 12.01부 (12.16부) 공문: 11.16이전
---	--------------------------------------

②						
품목	인상금액	A	D	B	C	비고
포도당(액당)	70(40)	77(45)	79(48)	78(47)	80(50)	
물엿(L/D)	65(55)	73(61)	74(63)	76(65)	75(65)	소분 최저 470, 1차 20원, 2차 30원
과당	30	35	38	37	40	
전분(공업)	65(30)	72(35)	74(36)	75(35)	77(36)	
식용용 전분	95	104	107	105	108	Waxy 등
IMO	75	83	84	83	85	
하이말토스	65	73	75	73	74	아이스올리고 포함

④					
적용		12/14	12/16	12/11	12/7
발송		11/16	11/19	11/23	11/26

①			
구분	18.05	20.12	증감
원료가	220	255	16%
환율	1,120	1,150	3%
	246	293	19%

○ 예컨대, 상기 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통해 4개 전분사들이 ①인상 이유의 경우 18.5월 대비 20.12월의 원료가격 16%, 환율 3% 인상을 제시하고, ②목표 인상금액 및 각 사 별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A: 삼양, D: 대상, B: 사조, C: 씨제이), ③가격인상 적용 시점(대리점 12.1., 대형 실수요처 12.16.), ④각 사별 공문발송 시점(11/16, 11/19, 11/23, 11/26) 등을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합의의 실행) 전분사들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가격 변경 품의를 하여 공문 또는 구두를 통해 전체 거래처에 통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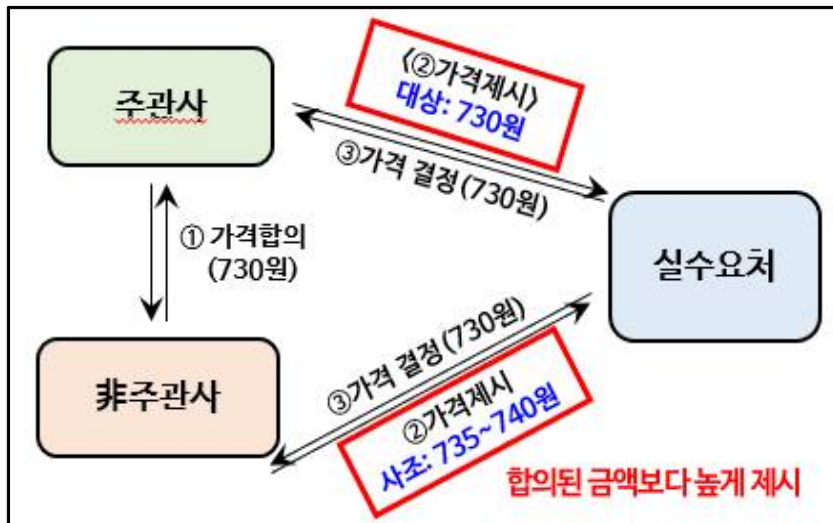
<전분당 가격 조정 내부분건(예시)>

제목	전분당 가격 조정 (21년3월)
1. 거래처	
2. 사유	원료가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 과당 : +30원/kg
	- 포도당 : +50원/kg
3. 적용 시기	2021년3월1일부

□ (이행점검) 전분사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실제 합의내용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였다.

- 우선, 각자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회사를 방문하여 공문에 품목별 인상폭, 인상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이 합의 내용에 따라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실제로 공문이 발송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 또한,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각 거래처 별로 가장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주관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전분사(비주관사)는 목표가격 수준으로 실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품앗이 대응을 하였다.

<거래처별 협상과정(예시)>



<전분사 소속 임직원 진술(발체)>

각 수요처별로 주 공급사가 우선적으로 가격 인하 폭 및 시기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주 공급사는 협상 과정에서 수요처의 요구수준과 이에 대한 인하폭을 다른 공급사와 공유하고 수요처와 합의할 가격 수준을 합의합니다. 그 후에 해당 수요처에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하는 주 공급사에서 별도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가격인하 폭을 최소한으로 합의하면, 주 공급사는 다른 공급사가 합의한 인하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수요처와의 협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공급사는 해당 인하폭보다 더 큰 인하폭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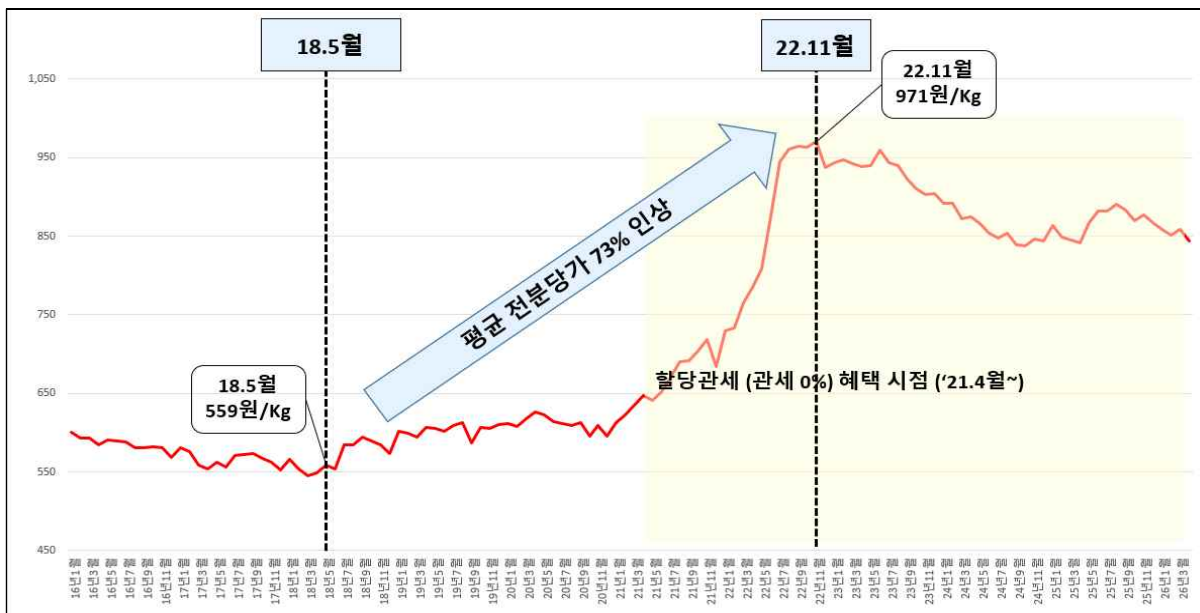
- 다른 전분사의 가격 인상이 합의 내용대로 실행이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전분사에 연락하여 이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전분사 소속 임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발체)>

○○○: 포도당 가격 도매쪽에서 안 올렸다고 너무 얘기가 나와서.. 혹시 확인 좀
 ○○○: 거래처를 1대1로 오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안 올린데를~
 □□□: 영업에서 확인해보니 ☆☆사에서 통보가 좀 늦어서 클레임을 제기했던건데 최근에는 통보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안되는 거래처가 있으시면 서로 딱 짚어서 확인하도록 해요. 그리고 포도당 건은 ○○○부장님께서 진행여부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직접 S사 영업에 전화를 하겠다 합니다.

- (경쟁제한적 효과) 국내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분사들은 상기와 같은 합의 및 실행을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였던 22.11월에는 담합을 시작하였던 18.5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할 수 있었다.**

<전분당 평균가격 변동>



- 또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으며,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었다.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4개 전분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 (시정명령)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담합 재발을 방지하고 경쟁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및 보고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 범위반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명령, 담합 여부 자체조사 실시 및 보고명령,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명령
 - (과징금) 전분사 4개사에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대상(주)	234,141
(유)사조씨피케이	200,132
(주)삼양사	210,340
씨제이제일제당(주)	102,965
합 계	747,578

□ 전분 및 전분당은 과자, 제빵, 음료, 주류, 소스 등 식료품의 주요 원재료로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 품목에 해당하며, 나아가 철강, 인쇄용지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 정부는 전분 및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이 국민 먹거리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분 및 전분당 판매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차지하는 전분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약 7년 5개월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 <참고> 1. 전분 및 전분당 상품 설명
2. 과거 담합 사건 중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건
3. 전분사 4사 일반 현황

참고 1

전분 및 전분당 상품 설명

- 전분은 식물의 줄기, 씨앗 등에 저장되는 열량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분은 대부분 옥수수를 원재료로 생산된다.
- 전분당은 전분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류를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과당,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이 있다.
 - * 물분자를 이용하여 기존 화학결합을 끊음으로써 보다 작은 분자단위로 쪼개는 것
- 전분당은 감미료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식료품에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을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 전분 및 전분당의 주요 용도 >

구분	주요 용도	주요 제품	
식품용 전분	음료, 과자·빵류, 주류		
		튀김가루	제빵
산업용 전분	골판지, 백상지,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골판지	성형탄 제조
포도당	수액, 음료, 제과 등		
		수액	젤리
과당	음료, 제과 등		
		음료수	요구르트
물엿	소스, 제과, 캔디 등		
		캔디류	빙과

참고 2**과거 담합 사건 중 과징금 부과액 상위 5건***

* 의결서상 미발송상태인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6,710억 원)은 제외
(단위 : 억 원)

연번	사건명	과징금액*
1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년)	6,689
2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6년)	3,960
3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6년)	3,505
4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4년)	3,478
5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383

※ 위 과징금액은 자진신고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은 의결서 상 부과금액이다.

참고 3

전분사 4개 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설립일	연도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대상	1956.7.20.	2025	36,018	1,104,135	3,528,856	150,519	△285,556
		2024	36,018	1,433,223	3,485,020	149,506	111,343
		2023	36,018	1,322,615	3,394,936	90,055	84,304
사조	1956.7.20.	2025	15,130	270,203	382,827	36,064	△62,100
		2024	15,130	328,225	411,741	49,060	36,677
		2023	15,130	294,561	424,375	13,957	11,949
삼양사	2011.11.3.	2025	53,417	1,420,399	1,897,133	65,862	△318,285
		2024	53,417	1,573,407	1,996,333	77,487	89,279
		2023	53,417	1,377,883	1,998,766	65,066	91,096
씨제이	2007.9.4.	2025	81,908	4,553,927	7,281,141	185,630	△589,605
		2024	81,908	5,271,051	7,598,277	275,834	△137,812
		2023	81,908	5,519,420	7,547,072	283,594	343,253

※ 전분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예상하여 당기순이익에 선(先) 반영하였다.